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27
----------	------

발의연월일 : 2017. 9. 15.

발의자 : 조훈현 · 김석기 · 김승희

김정재 · 곽대훈 · 송희경

이만희 · 이학재 · 홍철호

최연혜 · 김재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 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별도 관리·운용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에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 나.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 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 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20조제1항).
- 마. 각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 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함(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를 각각 “국민체육진 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취약분야 육성 및 스포츠산업 진흥 등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금의”를 “그 밖에 기금의”로 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

방·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금에”를 “국민체육진흥계정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기금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관리”를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운용”으로, “그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기금관리기관에”를 “계정관리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금관리기관은”을 “계정관리기관은”으로, “기금의 일부나 기금관리기관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로 한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기금관리기관은”을 각각 “계정관리기관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관이”를 “계정관리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관리기관은”을 “계정관리기관은”으로, “기금관리기관에”를 “계정관리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금관리기관에”를 “계정관리기관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금에”를 “국민체육진흥계정에”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금에”를 “국민체육진흥계정에”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기금에”를 “국민체육진흥계정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기금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관에”를 “계정관리기관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8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
성,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
성, 취약분야 육성 및 스포츠산
업 진흥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 설>

②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

-----.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
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
성

5.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
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
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의 예방·치료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료계정
으로 구분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

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
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
익금

5. ~ 8.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
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
로 관리·운용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
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
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
(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
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

으로 정한다.

2. • 3. (생략)

③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나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2. • 3. (현행과 같음)

③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 육진홍계정을 관리하는 기관
(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운용-----
-----국민체육진흥계정-----계정
-----관리기관에-----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계획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27조(환급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② (현행과 같음)

(4) _____

계정관리기관에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황급금)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국민체육진흥계정에-----

<p>1. (생 략)</p> <p>2. <u>기금의</u> 조성, 운용 및 관리 와 이에 땔린 사업</p> <p>3. ~ 5.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제55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u>기금관리기관에</u>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 ④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민체육진흥계정의</u>----- ----- -----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55조(과태료) ①----- ----- -----<u>계정관</u> <u>리기관에</u>-----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